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2. 06. 27(수), 14:00 ~
- ▣ 장 소 : 덕수궁 강당 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 | | |
|---|-------------------------------|----|
| 1 | 「함양 용유담」 명승 지정 | 공개 |
| 2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시립미술관 건립 | 공개 |
| 3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 전망대 건립 | 공개 |
| 4 |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다가구주택 증축 | 공개 |
| 5 | 「울진 성류굴」 성류산 등산로 개설 | 공개 |
| 6 |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 공개 |
| 7 |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주변 IUCN 기념 숲 조성 | 공개 |
| 8 | 「부산 오륙도」 주변 스카이워크 설치 | 공개 |

【검토사항】

| | | |
|---|----------------|----|
| 9 | 「산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 공개 |
|---|----------------|----|

【보고사항】

| | | |
|----|---|----|
| 10 |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개정(안) 보고 | 공개 |
| 11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 공개 |

【심의사항】

천기 2012-06-01

1. 「합양 용유담」 명승 지정

가. 제안사항

「합양 용유담(龍游潭)」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건은 '12년 4월 문화재위원회(4.18)에서 다음과 같이 심의 보류된 것으로 재부의를 하는 안건임.
 -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각계의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 심의를 보류함
 - 문화재청은 문정담 건설에 따른 용유담 보존을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
- 추진경과
 - '06.04.24.~'07.02.14. 전통명승 동천구곡 학술조사 결과 우수자원 선정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책임연구원 ***)
 - '11.11.03. 지정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합양 문화원장 ***)
 - '11.11.30.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추진)
 - '11.12.8.~'12.1.8 지정예고(의견접수: '사'항 참조)
 - '12.3.20.~21. 합양 용유담 현장, 댐건설 예정지 관계전문가 합동 현지조사(***) 문화재위원장, ***·***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 교수, *** 교수)
 - '12.4.18.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 지정 심의(심의보류)
 - '12.4.23.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통보
 - '12.6.21. 국토해양부 용유담 문화재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
 - 용유담을 보존하는 방안과 정부에서 댐계획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 지역과 환경단체간 갈등 완화 등을 위해 약 1년간 추가 검토를 통해 대안 마련후 명승 지정 추진 요망.

다. 명승지정에 대한 현 상황

- (지정반대) 국토해양부·수자원공사 및 함양군, 수몰지역주민 일부
 - 명승으로 지정될 경우 문정댐 건설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우려
- (지정찬성) 야당 국회의원, 조계종, 지리산 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일부
 - 용유담은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적 가치가 결합된 명승지로 보존되어야 하는 문화재이고, 댐 건설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훼손 우려

라. 주요내용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2) 신청내용

- 문화재명칭 : 함양 용유담(龍游潭)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1424번지 등 44,531㎡
- 문화재종별 : 명승
- 문화재가치
 - 함양 용유담은 마천면과 휴천면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리산의 아름다운 계곡들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합류되어 형성된 큰 계곡으로 ‘용유담(龍游潭)’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곳은 아홉 마리의 용이 놀았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연못의 규모가 크고 수심이 깊으며, 용이 남긴 흔적을 연상시키는 화강암 암반과 바위들이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나타냄.
 - 용유담은 신선이 노니는 별유천지로 예부터 시인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여름이 되면 각처의 피서객들이 휴식을 위해 모여드는 곳임.
 - 조선시대에 비가 부족하면 관아가 주도하여 기우제를 지낸 곳으로 가장 대표적인 장소로 함양군수로 있었던 김종직이 용에게 비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기우제를 지내고 지은 시가 전해져 내려오며, 조구명의 ‘용유담기’에서는 “마치 용이 머리를 쳐들고 꼬리를 흔드는 모양”이라 극찬했고, 수직 절리로 해체되어 드러난 하상을 “돌이 모두 개의 이빨처럼 나있다.”고 묘사했다는 기록이 전해 내려오는 역사문화 명승지임.
- 문화재구역 : 6필지 / 44,531㎡
- 문화재관리단체 : 함양군(함양군수)

마. 문화재 현황

○ 입지현황

- 엄천강 상류 함양군 마천면과 휴천면의 경계에 있다. 이곳은 과거 서부 경남에서도 가장 두메산골에 속했으나 함양·산청과 남원시 일원을 연결하는 60번 포장 도로가 엄천강을 따라 건설되어 최근에는 접근성이 좋다. 포장도로가 개설되면서 용유담은 특히 피서철을 중심으로 방문객이 많은 유원지가 되었다.

○ 유래 및 전설

- 옛 사람들은 지리산을 함양이나 북쪽에서 오르는 길로 용유담 벽송사를 많이 이용하면서 용유담을 탐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용유담’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아홉 마리의 용이 놀았을 만큼 연못의 규모가 크고 깊으며, 용이 남긴 흔적을 연상시키는 경관이 특징적이다.
- 조선시대에는 비가 부족하면 관아가 주도하여 기우제를 지냈는데 용유담이 기우제를 지낸 곳으로 가장 대표적 장소이다. 함양군수로 있던 김종직이 여기서 용에게 비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기우제를 지내고 지은 시가 남아 있다. 지금도 용에게 치성을 드리는 제단으로 이용되는 바위가 있다.
- 용유담의 소 안에 거북바위가 있는데 거북이 토끼 간을 찾아가기 위해 물으로 나왔다가 토끼를 놓쳐서 용왕으로부터 벌을 받아 바위로 변했다는 동화와 연관된 설화가 있다.
- 마적도사와 구룡 : 신라 무열왕 때 마적도사가 이 용유담에 와서 마적사란 절을 짓고 당나귀를 기르고 있었다. 식량과 부식물이 떨어지면 당나귀에 쪽지를 써서 관동장에 보내면 상인이 필수품을 챙겨 주어 신고 다시 돌아와서 말바위에서 울면 마적도사는 아홉 마리 용을 시켜 다리를 놓아서 건너오게 하였다. 하루는 말이 와서 울었으나 마적도사는 장기관에 정신이 빠져 있었고, 눈 먼 용을 제외한 8마리 용이 여의주를 서로 차지하여 하늘에 오르려고 물고 뜯고 싸우는 소리에 당나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해 나귀는 울다 지쳐서 죽고 말았다. 마적도사는 화가 나서 장기관을 던지니 깨어져 한 조각은 나귀 바위에 한 조각은 마적에 떨어졌다. 마적도사는 눈 먼 용 한 마리만 남겨놓고 8마리 모두 쫓아 버렸다.

○ 자연 지리적 현황

- 용유담 일대는 고도가 높고 체적이 큰 주변 산지, 무성한 삼림, 넓고 깊은 연못, 울퉁불퉁하고 하얀 암반 하상, 수많은 거력들, 와류 현상 등이 어우러진 절경이다. 이러한 경관을 조구명은 ‘용유담기’에서 용유담의 곡류 하도를 “마치 용이 머리를 쳐들고 꼬리를 흔드는 모양”이라 극찬했고, 수직절리로 해체되어 드러난 하상을 “돌이 모두 개의 이빨처럼 나있다.”고 묘사했다. 이와 같이 용유담은 경관 그 자체가 장관이기도 하지만, 선인들은 이곳을 기우체를 지낼 정도로 정서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이기도 하였다.

① 지리산 북쪽 산지를 동-서로 개척하는 협곡에 위치

- 용유담은 지리산 북쪽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의 남강 지류인 엄천강 중류에 위치함
- 거시적으로는 지리산 주능선으로부터 북쪽으로 뻗어 나온 산줄기들과 그 사이의 엄천강 중류 구간 모두 북동-남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는 곳곳에서 남-북과 동-서 방향의 구조선들을 반영하여 직각으로 꺾인 곡류 하도를 이룬다. 이와 같은 곡류 하도 중에서 용유담은 범화산(990m)~지리산의 새봉(1323m) 서쪽 산지에 이르는 산줄기를 동-서로 절단하는 좁은 협곡에 자리 잡고 있음.

② 수직절리를 따라 하얗게 드러난 울퉁불퉁한 바위들과 깊고 푸른 못의 발달

- 용유담 일대에는 화강암절편마암, 반상변정편마암이 주로 분포하며, 상류 쪽에는 반려암도 존재한다. 기반암에는 동서 방향의 협곡과 평행하거나 그에 수직인 남북 방향의 절리들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수직 절리들을 따라서는 암괴가 기계적으로 쪼개져 다양한 소지형들을 이루고 있음.
- 먼저 완만하게 경사진 판상절리를 따라 형성된 너럭바위들을 잘게 분할하여 암반하상의 측면에 울퉁불퉁한 암반이 드러나 있다. 너럭바위가 잘 발달한 농월정보다는 수직절리의 비중이 더 높은 거연정 주변 하상과도 유사한 모습이다. 이러한 암반하상에는 주변 산지에서 공급된 거력들이 산재해 있는데, 유수에 반복적으로 씻겨서 매우 하얗고 밝은 빛깔을 띤다.
- 또한 이 장소의 핵심적 경관 요소인 연못이 있는데, 그 규모는 폭이 약 30~80m, 길이 약 250m에 달한다. 협곡을 이루는 하도는 한 방향의 수직절리들이 깊게 풍화·침식되어 형성되는 반면, 여러 방향으로 교차하는 수직절리들이 밀도 높게 분포하는 곳에는 연못이 발달함.

③ 수많은 거력들이 쌓여 있는 여울목 경관

- 용유담 협곡의 입구와 출구는 직각으로 꺾이면서 굽이치는 좁은 유로가 발달해 있다. 이러한 여울목 구간을 따라서는 주변 산지로부터 기계적으로 쪼개져 형성된 수많은 거력들이 사면을 따라 밀려 내려와 쌓여 있다. 거력들은 직경 약 0.5~2m에 달하며, 크기가 작은 암설들과 함께 섞여 산재해 있다. 거력들은 모래알 수준으로 쪼개지지 않는 한 유수에 의해 쉽게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널려 있으며,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여 와류 현상을 일으킴.

○ 고문자료

- 조구명(趙龜命 1693-1737)은 ‘용유담기’에서 용유담의 곡류 하도를 “마치 용이 머리를 쳐들고 꼬리를 흔드는 모양”이라 극찬했고, 수직절리로 해체되어 드러난 하상을 “돌이 모두 개의 이빨처럼 나있다.”고 묘사함.

유용유담기. 遊龍游潭記

갑진년(1724) 8월 초하루 백씨가 길을 떠나 지리산으로 향했다. 나와 조구명(趙遇命)·조재복(趙載福)이 뒤를 따랐다. 사근역(沙斤驛) 찰방 권흠(權火翁)이 아들 권상경(權尙經)과 함께 먼저와 용유담을 구경했다. 용유담은 지세가 매우 깊고, 돌이 모두 개의 이빨처럼 나 있다. 물은 열 걸음에 아홉 번은 꺾일 정도로 굽이지고, 선회하며 소용돌이 치다 격렬하게 쏟아져 그 소리가 천둥소리와 같다. 용당(龍堂)이 맞은 편 언덕에 있다. 나무를 엮어 다리를 만들었는데, 아래를 보면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다리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어 두렵기 때문에 건널 수 없다. 다리 곁의 돌을 밟고 동쪽으로 백여 걸음쯤에 언덕에 붙어 가로놓인 큰 바위가 있다. 주위는 가락지처럼 둥그렇게 둘러 있고, 입구는 술통처럼 생겼다. 그 뒤는 몇 길이나 되는 바위가 있는데, 오솔길 같은 흔적이 굽이굽이 나 있다. 마치 용이 머리를 쳐들고 꼬리를 흔드는 모양이다. 돌들은 닳아서 반질반질한데, 그 모양이 매우 괴이하다. 용유담이라는 명칭이 이런 데서 나왔다.

이 날 밤 정혜대사(定慧大師)와 함께 군자사(君子寺)에서 묵었다. 대사가 말하기를 “옛날 마적조사(馬迹祖師)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연못 위에서 하안거(夏安居)를 하였는데, 물소리가 강설을 듣는데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용을 노하게 하여 채찍을 휘둘러 쫓아냈는데, 그 용이 아픔을 참지 못하고 바로 기세가 꺾여 바위에 나타난 것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 설은 사리에 맞지 않는 황당한 말로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의 일에는 정상적인 이치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유(韓愈)는 말하기를 “승려들은 환술에 능해 기능이 많다.”고 하였으니, 어찌 용을 항복 받고 호랑이를 굴복시킬 기술이 없다고 하겠는가? 용의 성품은 바위에 나타나지 않는다. 바위에 들어가면 바위가 그 때문에 뚫린다. 그리하여 단단해 뚫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을 단지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여길 뿐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서도 오히려 서로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없는데, 하물며 신령스런 용의 변화를 어떻게 알겠는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망령된 것이지만, 이런 일이 없어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망령된 것이다.

대체로 수석이 산의 북쪽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는 이 못이 제일 크다. 나는 그

기세가 기이하고 웅장한 것이 기뻐다. 조우명에게 시켜 다섯 사람의 이름을 바위 남쪽 벽에 쓰게 하였다. 그리고 직접 ‘바위는 움푹하고 물은 세차게 흐르며, 용은 노하고 신은 놀라네[石挾川駛龍怒神驚]’ 라는 8자를 써서 석공으로 하여금 새겨 넣게 하였다. 그리고 시를 읊기를 “지세는 그늘진 숲속에서 최고인데, 흐르는 물은 격렬하여 화살처럼 흐르네. 풍운이 용의 모습 드러나게 하였는데, 용의 집은 바위 뚫고 돌아들어간 곳. 깊은 가을 날씨처럼 소름이 오싹, 공연히 밝은 대낮에 천둥이 치네.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물 위의 위험한 다리를 건너, 물을 건너오니 살 길이 열린 듯하네.” 하였다.

- 조선 성종시대 함양군수로 재직한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은 용유담에서 해마다 춘령을 반포하는 행사를 지내기 위하여 용유담까지 험한 길을 와서 용에게 제사를 올리고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니 신령이 알아듣는 듯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아래 시를 남겼다.

이 내용은 기우제에 관한 것으로 농업국가였던 조선시대에는 가뭄이 들면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한해 농사를 시작하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에서는 비를 잘 내리도록 축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행사였다. 용유담은 비를 내리도록 하는 신령스러운 용이 사는 곳인 까닭에 기우제 뿐 아니라 농사를 시작하는 춘령(春令)을 반포하는 행사를 지내기에 가장 적지이다.

바. 지정조사 의견('11.11.3)

<문화재위원 ***>

- 용유담은 엄청난 위 계곡의 기암과 바위, 산림식생들이 대단히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용에 얽힌 많은 인문학적 이야기들과 함양군수로 있던 김종직의 기우제, 조구명의 용유담기 등이 전해져 오고 있어 자연 및 인문학이 결합된 복합명승으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명승지정을 적극 추천함.

※ 참고자료

1. 유래와 성격 : 옛 사람들은 지리산을 함양이나 북쪽에서 오르는 길로 용유담 벽송사를 많이 이용하면서 용유담을 탐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용유담은 지리산 북쪽 엄천계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기암괴석과 폭포소리, 서쪽 언덕의 나무숲과 푸른 담수에 높푸른 하늘이 어우러져 신비경을 자아내는 곳이다.
 - “용유담(龍遊潭)“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곳은 아홉 마리의 용이 놀았을 만큼 연못의 규모가 크고 깊고, 또한 이 곳에는 용이 남긴 흔적을 연상시키는 경관들이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가면서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주변에는 용에게 치성을 드리는 제단과 바위들이 남아 있다.

- 용유담은 지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기암과 바위, 그리고 계류가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면서 용에 얽힌 유래와 마적도사와 구룡, 말방울, 가사어, 구룡정, 마적사, 거북바위 등에 얽힌 전설 등이 내려옴으로써 용에 대한 장소성을 진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다.

2. 명승적 가치 특성

- 용유담은 지리산 북쪽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의 남강지류인 엄천강 중류에 위치한다. 거시적으로는 지리산 주능선으로부터 북쪽으로 뻗어나온 산줄기들과 그 사이의 엄천강 중류구간 모두 북동-남서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곳곳에서 남북과 동서방향의 구조선들이 직각으로 꺾인 곡류하도를 이룬다. 이와 같은 곡류하도 중에서 용유담은 법화산(990m)-지리산새봉(1,323M) 서쪽산지에 이르는 산줄기를 동서로 절단하는 좁은 협곡에 자리잡고 있다.
- 용유담 일대에는 화강암질 편마암, 반상변정 편마암이 주로 분포하며, 상류쪽에는 반려암도 존재한다. 완만하게 경사진 판상절리를 따라 형성된 너럭바위들을 잘게 분할하여 암반하상의 측면에서 울퉁불퉁한 암반이 드러나 있다. 이 장소의 핵심적 경관요소인 연못은 폭이 30-80m, 길이 약 250m에 달하며, 협곡을 이루는 하도는 한 방향의 수직절리들이 깊게 풍화, 침식되어 형성되는 반면, 여러 방향으로 교차하는 수직절리들이 밀도 높게 분포하면서 경관적으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 조선중기의 학자 조구명(趙龜命 1693-1737)은 용유담기에서 용유담의 곡류하도를 “마치 용이 머리를 쳐들고 꼬리를 흔드는 모양”이라 극찬했고, 수직절리로 해체되어 드러난 하상을 “돌이 모두 개의 이빨처럼 나있다”고 묘사했다.
- 용유담은 주위 지세가 급경사여서 수심이 깊고, 용이 머리를 쳐들 듯 혹은 바위를 파고 들어간 듯 괴이한 모양을 하고 있고 그 사이를 흐르는 우렁찬 물 소리는 마치 용이 노호하는 소리로 들리며, 하류에 펼쳐진 작은 바위 덩어리들은 용의 배설물의 흔적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 용유담의 장소적 이미지는 기우제를 지낸다는 점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용유담은 비를 내리도록 하는 신령스러운 용이 사는 곳인 까닭에 기우제 뿐 아니라 농사를 시작하는 춘령(春令)을 반포하는 행사를 하기에 가장 적지이다.
 - 조선 성종시대 함양군수로 재직하던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은 용유담에서 해마다 춘령을 반포하는 행사를 지내기 위하여 용유담까지 와서 제사를 올리고 백성들의 평안을 기원하니, 신령이 알아듣는 듯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시를 남겼다.

- “거센 물결 굽어보고 절벽을 우러르니, 가파른 길 꾸불꾸불 한자도 되지 않네.
 - 나는 반춘(班春) 때마다 이 험한 길 시험하니, 양장판(羊腸阪)만 수레 굴대를 꺾는 것이 아니도다. 계곡에는 수많은 돌들 거꾸로 서 있고, 조각한 듯 움푹 패인 구멍들은 누가 탐사하리오.
 - 푸른 이끼 굽어내고 글씨 쓰려 하였더니, 괴이한 말 용납 앓고 비가 쏟아지네.
 - 오뚝이 앉아 읊조리며 조화의 공 생각하니, 바위들이 음식, 술통 차려 놓은 것 같네.
 - 신비한 용아, 너에게 술 한 잔을 권하노니, 어찌하여 잠만 자며 지주 시름 더하느뇨?
 - 이 백성들 조세, 공물 마련해야 하니, 신룡에게 바라는 것 천등과 비뿐일세.
 - 온 골짜기 고개 숙인 곡식 여물지 못하니, 잘못된 정사가 하늘의 노염을 부른 듯.
 - 지난해의 빠른 응험 잊을 수 없으니, 범의 머리라도 수부(水府)에 주고 싶네.
 - 절벽 위에 서 있자니 서늘한 바람부니, 갑자기 신령이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듯 하다.“
- 용유담 서쪽 바위에는 김종직(金宗直), 정여창(鄭汝昌), 김일손(金駟孫), 조식(曹植), 이황(李滉), 강대수(姜大洙) 등의 장구소(杖屨所)라는 글이 음각되어 있고, 이 절경을 나타낸 수많은 명현석학들의 시와 서, 노래가 남아 있어 이곳의 장소성과 유명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전문위원 ***>

- 용유담은 웅장한 규격과 맑고 깊은 담, 거력이 어우러져 있어 호쾌함과 신비감을 자아내는 절경이다. 선유들의 행적과 기록에서도 역사문화적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며, 현대 지형학적으로도 중요한 地貌를 갖추고 있다. 용유담은 국가문화재인 명승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용유담이 위치한 계곡은 웅장한 규격과 함께 골짜기를 충전하고 있는 거력들이 독특하다. 엄천강 상류의 세찬 유속이 절리를 따라 곡저를 깊이 침식하고, 암반을 磨蝕하면서 暴壺와 瓶壺 등의 지형을 만들었다. 과거 한 반도가 습윤 냉량했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산출되었을 거력들이 계곡 측면에 울퉁불퉁 쌓여 있고, 문인과 유사들의 흔적이 이곳저곳의 암반과 거력에 나타난다. 크고 아름다운 계곡 바닥에 형성된 潭은 폭이 수십 미터, 길이가 2백 수십 미터에 달한다. 서늘한 기가 흐르는 맑고 푸른 담은 주변의 높은 산지 지형과 어우러져 있어 호쾌함과 신비감을 더하고 있다. 사람들의 탐방욕구와 훼손 위험은 곡저에 멀리 보이는 경사면에 이미 들어선 숙박시설에서도 찾을 수 있다. 보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용유담은 웅장함과 수려함, 지형학의 학술적 가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가문화재인 명승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함양문화원장 ***>

- 옛날부터 유원지이며 기암괴석이 기기묘묘하며, 암반 사이로 흐르는 폭포소리는 우레와 같고, 아홉 마리의 용이 놀았다 하여 용유담이다. 신선이 내려와 장기를 두었다는 장기바위 전설, 거북이 토끼 간을 가지러 왔다가 토끼를 놓쳐 용왕의 벌을 받아 바위가 되었다는 거북바위 전설, 눈 먼 용 한 마리 외 8마리가 싸우다가 마적도사에게 쫓겨난 전설 등이 유명하다.
- 장방형의 소(沼)가 비교적 크며, 가뭄이 심할 때면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1475년 김종직이 이 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내려올 때 비가 쏟아졌으나 비를 맞고 내려온 기록도 있다. 용소의 양안의 바위들과 푸른 물, 나무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물에는 가사어라는 고기가 살았으며, 고기 잡는 배가 떠 있었는데 신선도를 연상하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소에는 은어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용유담의 민요가 있으며 유희인, 신경직, 박영제의 한시가 있다.
-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기암괴석들, 수중어류, 신비로운 자연의 조화, 아름다운 전설 등을 보존해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로 학술적 가치가 크다.

사. 문화재 지정구역(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 ²) | | | 소유자 | |
|----|-----|--------|----|---------------------|--------|--------|-----------------|-----------|
| | | | | 지적 | 지정면적 | | 주소 | 성명 |
| | | | | | 당초 | 변경 | | |
| 1 | 문정리 | 1424 | 천 | 295,322 | 18,272 | 18,272 | | 국(건설부) |
| 2 | | 산131-5 | 임 | 4,583 | 1,451 | - | 함양군 휴천면 송림리 *** | *** |
| 3 | | 산132-5 | 임 | 1,655 | 1,007 | 1,007 | | 함양군 |
| 4 | | 산132-3 | 임 | 5,508 | 5,508 | 5,508 | | 함양군 |
| 5 | | 산132-4 | 도 | 920 | 83 | 83 | | 함양군 |
| 6 | 송전리 | 1262 | 천 | 37,114 | 15,268 | 15,268 | | 국(건설부) |
| 7 | | 산135 | 임 | 192,842 | 4,393 | 4,393 | | 경상남도(교육감) |
| 계 | | | | | 45,982 | 44,531 | | |

※ 지정예고시 지정구역에 포함된 산131-5지번은 소유자가 반대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제외

아. 지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 기관명 | 일시 | 의견 내용 |
|---------|-------------|---|
| 한국수자원공사 | 2012.01.04. | ○ ‘문정댐’ 건설 계획에 따라 댐건설 시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 “함양용유담”이 수몰지에 포함되어 지정제외 요청 |
| 함양군 | 2012.01.10. | ○ 국토부에서 남강유역 홍수 및 가뭄방지에 대한 댐추진 중임. ○ 함양군의 미래관광발전과 지역경제적 발전에 저해요인이 됨. |

자. 현지 합동조사 결과

- 조사 일시 : 2012.3.20~3.21(2일간)
- 조사 지역 : 함양군, 남원시, 산청군 일원
 - 안의댐 예정지, 신인월댐 예정지, 문정댐 예정지, 경호강댐 예정지
 - 용유담(명승지정 예정지), 거연정(명승)
- 조사단 : *** 문화재위원장, *** 위원, 황재하 위원, *** 전문위원, *** 교수, *** 교수, 문화재청 3명, 한국수자원공사 4명, 함양군 3명
- 조사의견
 - 명승지정 예정지인 용유담은 자연 및 인문학이 결합된 복합명승으로 반드시 지정 보존되어야 함을 재확인
 - 건설예정인 문정댐은 국가지정 명승지로 예고된 용유담을 수몰되게 하는 피해가 예상됨으로 다음과 같은 재검토 의견을 제시
 - 문정댐 예정지를 하천하류로 변경하고 댐 높이를 낮추어 용유담이 만수 시 잠기지 않도록 댐건설 계획 변경
 - 위와 같은 조치로 부족한 저유용량은 소규모 댐을 추가하여 해결하는 방안 강구
 - 위 방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정댐 건설을 백지화하고 제3의 장소에 댐건설예정지를 물색

차. 지정 예고 후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

| 기관명 | 일시 | 의견 내용 | 지정에 대한 의견 |
|--|------------|---|-----------|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 2012.3.22. | ○댐예정지라고 하여 문화재 지정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용유담은 반드시 보존하여야 함. ○용유담이 문화재(명승)로 지정되어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존재이유를 밝혀야 함. | 찬성 |
| 지리산생명연대 | 2012.3.23. | ○용유담의 명승지정은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국가의무임. 이미 그 가치가 인정되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해야 마땅함. | 찬성 |
| 지리산실상사 | 2012.3.23. | ○문화재청은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하고 지리산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철저히 보호·관리하여야 함. | 찬성 |
| 진주환경운동연합 | 2012.3.26. | ○지리산주변 댐건설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설명과 문화재 지정의 당위성 설명함. ○지리산댐 반대 서명부 제출함. - 서명자 13,030명에 대한 서명부 제출함. | 찬성 |
| 대한불교조계종 | 2012.3.27. | ○당초 계획대로 함양 용유담을 국가명승으로 지정하여 문화유산으로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함. | 찬성 |
| 재단법인 환경재단 | 2012.4.03. | ○용유담의 비경의 자연경관은 유구한 세월이 만들어낸 우리만의 유산이며, 용유담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야 함. | 찬성 |
| 지리산 문정댐 추진위원회 | 2012.3.22. | ○지리산댐 건설예정지 하류에 수해가 매년 발생하여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막심하여 댐 건설이 필요함. ○지리산댐 찬성 서명부 제출함. - 서명자 240여명 서명부 제출함. | 반대 |
| 마천면 이장단 협의회 함양군 귀농인 협의회 함양군 마천면 노인회 마천면 원정리 마천면 체육회 | 2012.4.10 | ○주민과 사전협의 없는 문화재 지정 반대함.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인한 지정 반대함. ○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기 때문에 지정 철회 요청함. | 반대 |

카. 참고사항

-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 의견 : 별도 배부

타. 의결사항 : 보류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시립미술관 신축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시립미술관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시립미술관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광역시
- (2) 대상문화재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 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시립미술관 신축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9-34번지
 - 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4,819㎡(1,457평)/15,211㎡(4,610평)
 -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4층(최고높이 20.7m)
 - 사업기간 : '12. 9월 ~ '15. 2월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해당지역은 을숙도 문화관 등 각종 문화·편의시설이 건립되어 있어 철새활동에 방해요소가 많은 지역임.
- 을숙도는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의 핵심지역으로 시립미술관과 같이 대규모 시설이 건립된다면, 철새도래지로서 기능이 급격히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철새도래지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공시설의 설치를 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마. 참고자료(서면검토 의견 / '12. 6. 18)

< *** 문화재위원 >

- 천연기념물 제 179호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는 과거 20~30여 년 전에는 많은 월동조류들이 도래하였던 곳이나 하구 뚝 건설과 을숙도의 개발, 그리고 명지대교건설 및 기타 토목공사 등으로 조류의 종 및 개체수가 현격히 줄어들었다. 금번 사업 신청한 제 2시립미술관 설치에 대한 현상변경 신청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아 래

수변공간에 시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인 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 179호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인 점을 인식하여 강 하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태적으로 건전한 하천공간으로 정비하여 철새도래지의 기능을 살리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월동조류 및 번식조류 등의 생태를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

본 신청건은 25,000m²에 이르는 면적으로 지나치게 넓은 면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겨울철에 을숙도를 이용하는 철새는 물론 여름철에 이 지역에서 번식하는 조류(쇠제비갈매기, 물닭 및 물떼새류)를 위한 공간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본 사업 계획은 강 하구 본래의 기능인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의 명성을 회복하도록, 인간을 위한 인공 건조물의 공간은 최소 공간만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을숙도의 경우 나머지 공간은 생태보존 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 의결사항 : 보류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탐방용 전망대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탐방용 전망대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탐방용 전망대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부산광역시장

(2) 대상문화재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제179호)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지정일 : 1966. 7.23.

(3) 신청내용

○ 사업명 :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내 생태탐방용 전망대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739번지

○ 사업내용

- 가로×세로×높이 : 5m×5m×10m

- 재질 : 철재, 외부 친환경 목재마감

○ 사업기간 : 허가일~2012. 7. 31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해당 시설물은 낙동강살리기 사업관련 공사현장 조망대였던 것을 생태탐방 전망대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활용성보다 문화재 경관 훼손의 우려가 있음.

마. 참고자료(서면검토 의견 / '12. 6. 18)

< *** 문화재위원 >

본 사업은 4대강정비사업 중에 임시 설치된 시설물을 활용한 철새조망대 이용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본 철새조망대 설치 예정지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철새관찰에 큰 지장이 없으며 본 시설물은 철새조망대로의 기능보다는 철새들에게 시각적으로는 물론 이동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본 시설물은 현 문화재구역의 전체적인 경관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많은 철새관찰 및 기타 조망대에 설치된 고성능망원경은 설치비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건은 4대강 정비사업시 계획된 바와 같이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4.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다가구주택 증축

가. 제안사항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다가구 주택 증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천제연 난대림」 주변 다가구 주택 증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 제5차 위원회 시 부결된 사항으로 위치 및 규모 등을 변경하여 재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천제연 난대림(천연기념물 제378호)
 - 소재지 :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2785-1
 - 지정일 : 1993.8.19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다가구주택 증축
 -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외 2필지
 - 사업내용

| 구분 | 1차신청('12. 5월) | 2차신청('12. 6월) |
|----------|-------------------|-----------------|
| 건물위치 | 지정구역으로부터 7.5m | 지정구역으로부터 18m |
| 건축면적/연면적 | 290.42㎡/619.12㎡ | 319.20㎡/738.20㎡ |
| 건물규모 | 지상 3층, 높이 10.775m | 지상 3층, 높이 11m |
| 건물용도 | 다가구 주택 | 다가구주택 및 일반 음식점 |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18m이격(1구역/기존 건물 개축·재축)

라. 검토의견 (*****)

- 신청 대상지는 문화재지정구역으로부터 18m이격된 위치로 현상변경 허용 기준상 1구역(기존 건물 개축·재축)에 해당되며, 기존 창고 및 2층 건물 철거 후 3층 건물로 증축하는 사항으로 문화재 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5. 「울진 성류굴」 성류산 등산로 개설

가. 제안사항

「울진 성류굴」 성류산 등산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진 성류굴」 성류산 등산로 개설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울진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55호 울진 성류굴
 - 소재지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30번지
 - 지정일 : 1963. 5. 7.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성류산 등산로 개설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산30번지
 - 사업내용 : 등산로 개설(B=1.2m, L=1.2km)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내

라. 검토의견 (*****)

- 울진 성류굴 지정구역 내 성류산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며, 데크 설치를 하여 등산로를 개설을 하는 것은 지하 성류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 '12. 5. 31.)

<** 한국동굴연구소 **>

- 동굴이 분포하는 상부지표에 데크를 설치하여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성류굴 내부의 천장에는 수많은 용식공과 같이 틈들이 있어서 지표수 등이 유입되는 곳이 많다. 또한 성류굴 내 여러 개의 호수가 있으며 상부지표의 지표수가 토양과 암석을 통과하여 동굴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부지표에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있게 되면 동굴과 인접한 상부지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천연기념물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상부지표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등산로를 설치하기 보다는 성류굴 주변의 상가(북쪽과 남쪽)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6.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주변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을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 소재지 :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번지
 - 지정일 : 1971. 9. 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 사업위치 :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 외 1필지
 - 사업내용 :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 건축물 신축 : 2동, 주차장 설치
-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으로부터 약 150m 이격(1구역 : 원지형 보존지역,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 사업 예정지 중 1구역은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는 소천굴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 '12. 6. 12.)

<*** 문화재위원>

- 사업예정지구는 현재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과 3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1구역 해당지역은 원형보존 지역임.
- 소천굴은 제3출입구가 발견됨으로 인하여 그 연장이 확인되어 지정구역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사업예정지역은 연장구역에 인접되어 있음으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소천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사업예정지역은 사구층이 발달된 지역으로서 사구층 자체도 보존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석회질 사구층(패사층; 貝砂層)으로 인하여 향후 소천굴 내부에 석회질 동굴생성물이 발달되어 제2의 용천동굴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 있음.
- 따라서 사업예정지구는 원형이 보존되어야 함.

<*** 문화재위원>

- 신축건물 2동의 규모가 비교적 작아 경관을 크게 저해하거나 지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주차장 부지의 경우도 굴착 등 지반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 다만 건물 신축 대상지가 지정구역에 근접하고 있고, 동굴 상부 지표층을 피복하고 있는 패각사의 제거가 동굴에 미치는 영향과 지하수위 변화, 지표수의 유입 교란 등에 대한 판단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시설 신축이 국가지정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바. 의결사항 : 부결

7.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주변 IUCN 기념 숲 조성

가. 제안사항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주변 IUCN 기념 숲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주변 IUCN 기념 숲 조성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02-1번지

○ 지정일 : 2005. 1. 6.

(3) 신청내용

○ 사업명 : IUCN 기념 숲 조성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21, 산96-1, 산99, 산100

○ 사업내용 : IUCN 기념 숲 조성

- 토목공사: 토공사(절토 및 성토), 우수공사(배수로 설치), 포장공사(송이석 포장: 7,075m²)

- 조경공사: 식재, 시설물공사

· 짙래/청미래 덩굴 13,904m² 제거 / 동백나무 외 1종 35주 이식 / 구실잣밤나무 외 28종 1,271주, 산수국 외 6종 7,765주, 털머위 외 3종 1,060본 식재

(4) 문화재와의 거리 : 지정구역 인접(2구역 : 농·임업에 한해 1,000m²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기타시설용도의 토지와 임야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적용)

라. 검토의견 (*****)

○ 천연기념물 제444호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주변 인위적인 숲 조성 사업은 주변에 위치한 동굴 보존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 '12. 6. 12.)

<*** 문화재위원>

-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개최를 계기로, 인위적으로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세계자연유산과 관련된 지역에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고 관람로를 만들어 'IUCN 기념숲'을 조성한다는 것은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의 기본취지와 철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원형보존이 바람직함.

<*** 문화재위원>

- 선흘리 거문오름을 세계자연유산 용암동굴계의 근원이 되는 화구이며, 사업 지역으로 신청된 지역의 하부에는 또 다른 용암동굴의 존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훼손 방지가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 세계자연유산 지정 지역에 인공적인 수림의 조성이나 구조물의 설치는 기본 목적에 반하는 일로 생각된다. 특히 보존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일종에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대규모의 인위적인 환경 교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동굴의 특징적인 현상들이 지하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인공수림의 조성은 지하수의 평형을 깨트릴 가능성이 높아 심각하게 영향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과도한 데크 설치나 휴게 시설도 훼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8. 「부산 오륙도」 주변 스카이워크 설치

가. 제안사항

「부산 오륙도」 주변 스카이워크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재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 오륙도」 주변 스카이워크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부산남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부산 오륙도(명승 제24호)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36 등
 - 지정일 : 2007. 10. 01.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부산 오륙도」 주변 스카이워크 설치
 - 사업위치 : 부산 오륙도 주변 500m이내 지역(제 1구역)
 - 사업내용 : 스카이워크 설치
 - 사업면적 : 1,854.1㎡(도로부 491.4㎡)
 - 시설내용 : 스카이워크(1식)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스카이워크 돌출부 길이 | L : 13m | L : 9m |
| 스카이워크 통로 폭 | W : 2m | W : 2m |
| 조경계획 | 과고라 2개, 평의자 14개, 테크바닥 | 광장 조성 |

- 사업기간 : 허가일 ~ 2013. 7.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 지정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

라. 검토의견(***)**

- 해당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해당지역으로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되는 지역이나 .
- 동 시설은 오류도 조망을 위한 시설이며, 소규모이므로 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단, 색상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조치 필요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검토사항】

천기 2012-06-09

9. 『산양보호구역』 확대지정

가. 제안사항

양구 산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의 증식복원 및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원도 양구군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소재지 : 전국일원
 - 지정일 : 1968. 11. 22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보호구역 확대
 - 당초 지정구역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 29필지
 - 확대 지정구역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동면 팔랑리 산26번지
- ※ 붙임 1 : 기존 지정구역 및 확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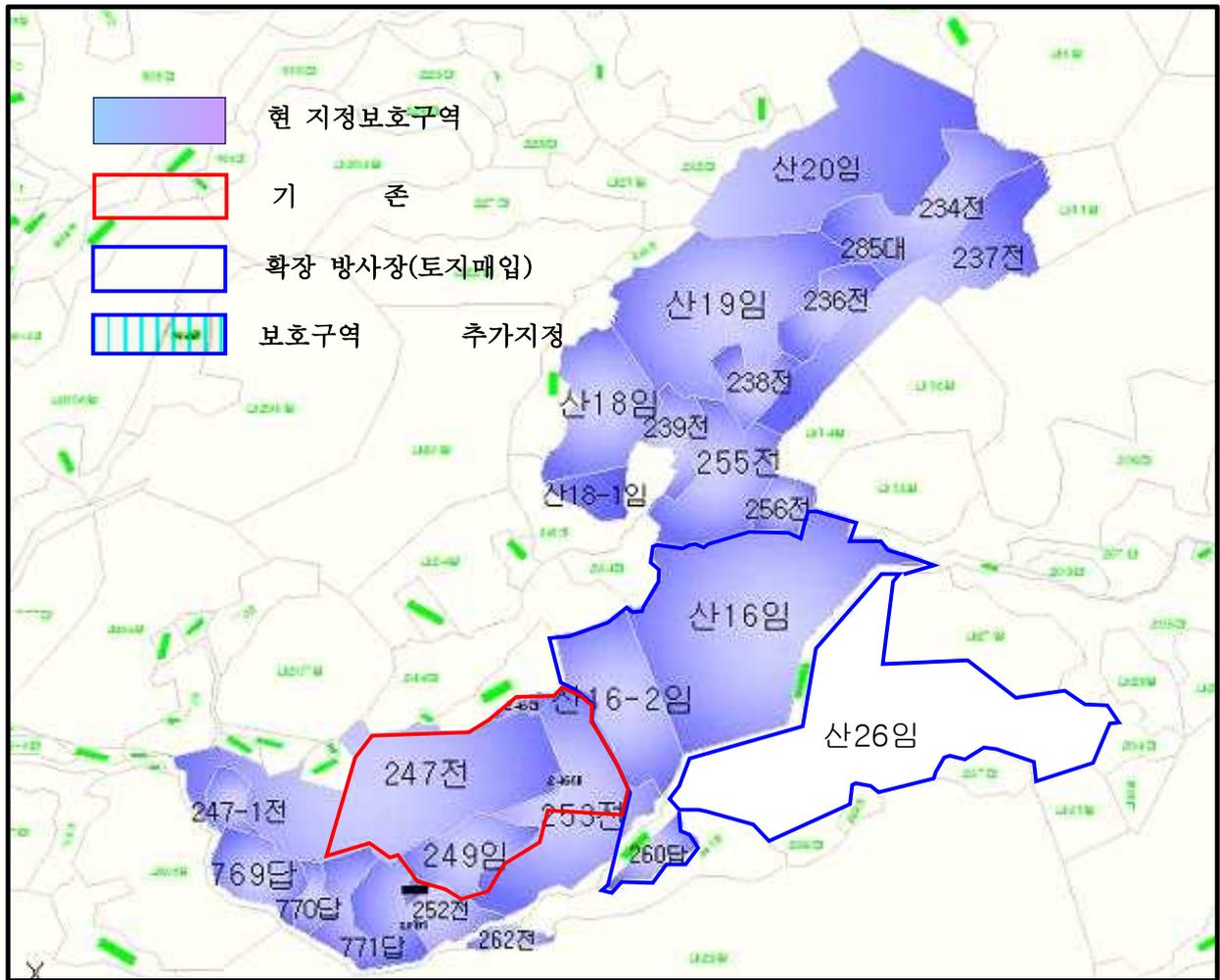
라. 검토의견 (*****)

- 산양의 안정적인 개체군 확보 및 보호관리를 위해 우리 청에서는 2009.9.19 산양이 서식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형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동면 팔랑리 247번지 등 29필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음.
- 그러나 최근 개체수 증가로 인해 현재 지정된 보호구역이 산양이 서식하기에는 협소하여, 이로 인한 짝짓기 시기 수컷 산양의 공격으로 암컷 및 새끼 산양의 부상 우려가 있음.
- 이에 현재 산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 의견)

-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의 개체수가 증가됨에 따라 산양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지형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토지를 추가 지정하여 보다 안정된 「산양증식 및 복원」을 위한 서식지로 조정하고자 함.

국가지정문화재(천기 제217호 산양) 보호구역 도면



붙임 1

| 구분 | 재산의 표시 | | | | 소유자 | |
|-------------|--------|-----------|-------|----------------------|-------------|--------|
| | 지 목 | 소재지 | 지 번 | 지 적(m ²) | 주소 | 성 명 |
| 기존 지정구역 | 전 | 동면 팔랑리 | 247 | 22,662 | 양구군 양구읍 하리 | 양구군 |
| | 전 | | 247-1 | 1,550 | | |
| | 대 | | 248 | 142 | | |
| | 대 | | 250 | 347 | | |
| | 대 | | 251 | 69 | | |
| | 전 | | 252 | 4,826 | | |
| | 전 | | 253 | 12,288 | | |
| | 전 | | 262 | 912 | | |
| | 답 | | 769 | 3,736 | | |
| | 답 | | 770 | 1,246 | | |
| | 답 | | 771 | 3,871 | | |
| | 대 | | 772 | 129 | | |
| | 전 | | 246 | 479 | 양구군 동면 팔랑리 | *** |
| | 임 | | 249 | 4,159 | 양구군 양구읍 하리 | 양구군 |
| | 임 | | 산16 | 25,415 | | |
| | 임 | | 산16-2 | 8,502 |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 *** |
| | 임 | | 산18 | 7,934 | | 국(국방부) |
| | 임 | | 산18-1 | 1,983 | 양구군 양구읍 하리 | 양구군 |
| | 임 | | 산19 | 16,060 | | |
| | 임 | | 산20 | 19,736 | | |
| | 전 | | 234 | 8,172 | | |
| | 대 | | 235 | 334 | | |
| | 전 | | 236 | 3,468 | | |
| | 전 | | 237 | 11,465 | | |
| | 전 | | 238 | 2,595 | | |
| | 전 | | 239 | 2,142 | | |
| 전 | | 255 | 7,557 | | | |
| 전 | | 256 | 1,805 | 경기 안성 공도면 중복리 499 | *** | |
| 전 | | 260 | 1,653 | 양구군 양구읍 하리 | 양구군 | |
| 합계 | | | 29필지 | 175,237 | | |
| 추가 지정 구역 | 임 | 동면 팔랑리 | 산26번지 | 29,058 | 양구군 양구읍 하리 | 양구군 |

바. 의결사항 : 원안검토

【보고사항】

천기 2012-06-10

10.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개정(안) 보고

가. 보고사항

조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개정(안)」(문화재청 훈령 제228호)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개정(안) 을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 (1) 개정이유 : 조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목 명칭 중 “수임”을 “위임”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우리청 입장에서 일 부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지자체 입장에서 수용하는 용어인 수임이란 단어는 부적절하여 변경하게 되었음
 - “기존시설물 및 건축물등의 유지관리”라는 행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의미 하는 바가 신축과 개·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행위판단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해당내용을 “현상 유지를 위한 기존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개보수”로 수정(제2조 제2항 1호)
 -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개축·재축”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하여 왔으나 증축범위(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이내. 단, 1회에 한 함)를 추가(제2조 제2항 2호)

- 명승이나 천연보호구역과 같이 자연환경이 우선시되는 문화재의 경우 산림의 식생관리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행위인 고사목 제거, 갈대제거, 병충해방제, 거름주기와 단순한 숲가꾸기, 간벌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제2조 제2항 3호)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간이시설물 및 행사를 위하여 임시 설치하는 시설물(사용기간이 3개월 이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절차간소화(제2조 제2항 4호)
- 위임한 사항에 대해 단순하고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의 변경에 대해서도 권한 위임(제2조 제2항 6호)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붙임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개정(안)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개정(안)

개정 2012.08.31. 문화재청 훈령 제000호
일부개정 2011.04.01. 문화재 훈령 제228호
제정 2010.09.17. 문화재청 훈령 제218호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의 지정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 및 그 취소 중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 [천연기념물을 표본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에 따라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사항을 위임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재청장이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의 개·보수
 - 도로 덧씌우기, 갓길 포장, 배수로 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개보수, 상·하수 관로 개보수, 지붕 변화, 단청, 화장실 개보수, 도로안내판 설치 등
2.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증축
 -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범위 이하(단, 1회에 한함)
3. 산림의 식생관리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 고사목 제거, 갈대제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단순한 숲가꾸기, 간벌
4.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 소규모 매표소·안내소, 각종 안내판, 경미한 임시활용 시설물(자치단체가 매년 시행하는 행사 시설물로서 사용기간이 3개월 이내인 시설물) 등

5. 양식업 허가기간 연장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임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제3조(현상변경 허가 등 기준 및 절차) ① 시·도지사의 현상변경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 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별지 제2호서식)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받으면 현상변경 허가 신청사항의 시급성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71조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6조에 따라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재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 사항, 허가 기간 및 허가 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허가조건 등 고려사항) 시·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허가할 경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5조(현상변경 허가 등에 따른 처리상황 제출) ① 시·도지사는 현상변경 허가 등을 할 경우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5일 안에 허가 또는 그 취소한 내용·사유·현황사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행위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이행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1.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

다. 보고내용

| 구분 | 대상문화재 | 주요내용 | 비고 |
|----------------|---|--|------|
| 현상 변경 허가 |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SBS TV 동물농장(***) ○ 허가사항 : 교무실로 들어온 하늘다람쥐에 대한 포획·방사 및 촬영 ○ 허가기간 : 2012.5.16 ~ 2012.5.21 ○ 개체수 : 하늘다람쥐 1마리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324-2호 붉은박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국립생물자원관장 ○ 허가사항 : 붉은박쥐의 동면 이후 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포획 ○ 허가기간 : 2012.5.24 ~ 2012.11.30 ○ 포획장소 : 충청북도 진천군 금암리 폐광 ○ 개체수 : 붉은박쥐 5마리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202호 두루미, 제203호 재두루미, 제201-3호 흑고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경북대학교 조류생태환경연구소(***) ○ 허가사항 :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의 인공증식 연구를 위한 사육 ○ 허가기간 : 2012.5.24 ~ 2017.5.23 ○ 사육장소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산45 조류생태환경연구소 ○ 개체수 : 흑고니 28개체, 두루미 3개체, 재두루미 2개체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사)한국물새네트워크(***) ○ 허가사항 : 천연기념물 저어새 가락지 부착을 위한 포획 ○ 허가기간 : 2012.5.31 ~ 2012.8.31 ○ 포획장소 : 인천광역시 일대(중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 전라남도 영광군 일대 ○ 개체수 : 각 지역(5곳)당 포획개체수가 5마리 이내가 되도록 포획 | |

| 구분 | 대상문화재 | 주요내용 | 비고 |
|----|--|--|------|
| | 천연기념물 제24-2호 수리부영이 제324-7호 큰소쩍새 제323-1호 참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충남산림환경연구소장 ○ 허가사항 : 관람·전시를 위한 방사 불가능한 개체 사육 ○ 허가기간 : 2012.6.1 ~ 2017.5.31 ○ 사육장소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산림박물관길 110 충남산림환경연구소 ○ 개체수 : 수리부영이 2개체, 큰소쩍새 2개체, 참매 1개체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사)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 ○ 허가사항 :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복원·증식을 위한 포획 및 사육 ○ 허가기간 : 2012.6.18 ~ 2012.8.31 ○ 포획장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일대, 평창군 오대산 월정사 일대, 경기도 포천시 광릉 일대 ○ 개체수 : 지역 당 암수 1쌍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제 :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문경시장)등 8건 ○ 조각 : 천연기념물 제 재두루미(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1건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455호 하동 송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43-10 ○ 사업명 : 섬진강살리기 하동지구 사업 ○ 사업내용 : 가옥철거 8가구 39개동 ○ 허가기간 : 허가일~2012.12.31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사업명 : 우회 탐방로 개설 ○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0 ○ 사업내용 : 기존 탐방로 철거 800m 우회 탐방로 개설 740m ○ 허가기간 : 허가일~2012.11.30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암주지 *** ○ 사업명 : 봉정암 선방 신축 ○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76 ○ 사업내용 : 선방철거(40.24㎡) 후 신축 (37.80㎡/정면 3칸, 측면 2칸)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2.12.31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천연보호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주)SK텔레콤 서부네트워크 ○ 사업명 : 통신시설 설치 ○ 사업위치 :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166-1 ○ 사업내용 : 통신시설(H=12m, 3분) 및 주변 휨스 (H=1.5m,L=16m) 설치 | <허가> |

| 구분 | 대상문화재 | 주요내용 | 비고 |
|----|---|--|------|
| | |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3. 6.30 | |
|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 ○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업명 : 통합 인증서 조형물 설치 ○ 사업내용 : 정주석 2개소 및 메달리스트 1개소 설치 ○ 허가기간 : 허가일~2012.8.31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 신청인 : 주식회사 드림라인 ○ 사업명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오라2동 산107-20 등 ○ 사업내용 : 통신 강관주(2개소) 및 전기통신 관로 (10km, 폭20cm)설치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2.12.31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 ○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업명 : 성산일출봉 탐방안내센터 정비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 284-12 ○ 사업내용 : 탐방안내센터 및 상가 리모델링, 매·수표소 정비 등 ○ 허가기간 : 허가일 ~ 2012.10.31 | <허가> |
| | 천연기념물 제146호 칠곡 금무봉 나무고사리 화석산지 | ○ 신청인 : *** ○ 사업명 : 지하수 개발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98-10번지 ○ 사업내용 : 지하수 개발 - 굴착깊이 100m ○ 허가기간 : 허가일~2012. 12. 31. | <허가> |
| | 명승 제60호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 | ○ 신청인 : 봉화군수 ○ 신청내용 - 사업명 : 주택인근 피해목 제거사업 - 위치 : 문화재지정구역 내 주택인근 - 내용 : 주택인근 피해목 제거 · 소나무 등 10주 제거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12.07.31 | <허가> |
| |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 ○ 신청인 : 공주시장 ○ 신청내용 - 사업명 : 고마나루 송림복원사업 - 위치 : 문화재지정구역 내 - 내용 : 소나무 101그루 복원식재, 도로 콘크리트 철거 360m | <허가> |

| 구분 | 대상문화재 | 주요내용 | 비고 |
|------------|--|--|--------------|
| | <p>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p> | <p>-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12.12.31</p> <p>○ 신청인 :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장</p> <p>○ 신청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가야산국립공원 소리길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 위치 : 지정구역 내 - 내용 :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 설치면적:150㎡ · 화장실 신축:26.80㎡/1층 경량철골구조, 외벽 목재마감, 지붕 아스팔트청글 · 오수정화조 10톤 · 목재데크 및 편의시설(65㎡) <p>-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12.12.31</p> <p>○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p> | <허가> |
| | <p>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p> | <p>○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장</p> <p>○ 사업명 : 어승생 제2저수지 개발</p> <p>○ 사업위치 : 제주시 해안동 산219-2</p> <p>○ 변경사항 : 도수관로 연장 변경 및 어리목 광장 내 관로매설 추가 (당초)7.4km→(변경)7.89km</p> | <허가사항 변경 허가> |
| 허가사항 변경 허가 | <p>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명승 제78호 제주 서귀포 쇠소깍</p> | <p>○ 신청인 : ***</p> <p>○ 사업명 : 소매점 신축</p> <p>○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하효동 ***</p> <p>○ 변경사항 : 소매점 면적 및 구조 변경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 (당초)275.40㎡→(변경)225.18㎡ - 구조 : (당초)경량철골구조→(변경)철근콘크리트조 - 높이 : (당초)1층 4.5m→(변경)1층 3.9m | <허가사항 변경 허가> |
| | <p>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p> | <p>○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장</p> <p>○ 사업명 : 지하수 개발</p> <p>○ 사업위치 :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3173</p> <p>○ 변경사항 : 허가기간 연장 (당초)허가일~2012.6.30→(변경)허가일~2012.11.30</p> | <허가사항 변경 허가> |

| 구분 | 대상문화재 | 주요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사업명 : 제2소수력 발전소 설치 ○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해안동 산220-3 ○ 변경사항 : 착수정 위치 변경 및 허가기간 연장 -(당초)허가일~2012.8.30->(변경)허가일~2012.12.31 | <허가사항 변경 허가> | | | | | | | | | | | | | | | |
| |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외2인 ○ 신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매장물 발굴(금괴) - 위치 : 공주시 쌍신동 385-2번지 - 내용 : 발굴 면적 580㎡ - 당초 허가기간 : '12.4.16~'12.5.30 - 변경 허가기간 : '12.5.11~'12.9.30 ○ 문화재와의 거리 : 외곽경계 110m | <허가사항 변경 허가> | | | | | | | | | | | | | | | |
| |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합천군수 ○ 신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해인사 고운정사 신축공사 - 위치 :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산3-1 고운정사 - 내용 : <table border="1" data-bbox="480 1146 1225 1536"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35%;">당 초</th> <th style="width: 35%;">변 경</th> </tr> </thead> <tbody> <tr> <td>대지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160㎡</td> <td style="text-align: center;">577㎡</td> </tr> <tr> <td>건축면적</td> <td>-지상1층(법당):64.80㎡ -지상1층(요사채):162.00㎡</td> <td>-지상1층(법당):64.80㎡ -변경없음</td> </tr> <tr> <td>구조</td> <td>-법당:한식 목조와가 굴도리 3량가/정면3칸 측면2칸 1동 -요사채 철근 콘크리트 1동</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경없음</td> </tr> <tr> <td>허가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2011.10.27 ~ 2012.12.31.</td> <td style="text-align: center;">변경없음</td> </tr> </tbody> </table> | 구분 | 당 초 | 변 경 | 대지면적 | 1160㎡ | 577㎡ | 건축면적 | -지상1층(법당):64.80㎡ -지상1층(요사채):162.00㎡ | -지상1층(법당):64.80㎡ -변경없음 | 구조 | -법당:한식 목조와가 굴도리 3량가/정면3칸 측면2칸 1동 -요사채 철근 콘크리트 1동 | 변경없음 | 허가기간 | 2011.10.27 ~ 2012.12.31. | 변경없음 | <허가사항 변경 허가> |
| 구분 | 당 초 | 변 경 | | | | | | | | | | | | | | | | |
| 대지면적 | 1160㎡ | 577㎡ | | | | | | | | | | | | | | | | |
| 건축면적 | -지상1층(법당):64.80㎡ -지상1층(요사채):162.00㎡ | -지상1층(법당):64.80㎡ -변경없음 | | | | | | | | | | | | | | | | |
| 구조 | -법당:한식 목조와가 굴도리 3량가/정면3칸 측면2칸 1동 -요사채 철근 콘크리트 1동 | 변경없음 | | | | | | | | | | | | | | | | |
| 허가기간 | 2011.10.27 ~ 2012.12.31. | 변경없음 | | | | | | | | | | | | | | | | |
| |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 합천군수 ○ 신청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가야산 해인사 원당암 석교설치 및 주변정비 공사 - 위치 :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1번지 원당암 주변 - 내용 : <table border="1" data-bbox="480 1906 1225 2029"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변경전</th> <th style="width: 25%;">변경후</th> </tr> </thead> <tbody> <tr> <td>석교(홍예) 설치</td> <td>-L=35m, B=7m -철근콘크리트조</td> <td>-L=20m, B=7m -철근콘크리트조</td> </tr> </tbody> </table>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석교(홍예) 설치 | -L=35m, B=7m -철근콘크리트조 | -L=20m, B=7m -철근콘크리트조 | <허가사항 변경 허가> | | | | | | | | |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 | | | | | | | | | | | | | |
| 석교(홍예) 설치 | -L=35m, B=7m -철근콘크리트조 | -L=20m, B=7m -철근콘크리트조 | | | | | | | | | | | | | | | | |

| 구분 | 대상문화재 | 주요내용 | | | 비고 |
|----|-----------------------------|--|----------------------|--------------------------------------|--------|
| | | 아스콘 포장공사 | L=160m, B=5m | L=191.8m, B=5m | |
| | | 주변정비 | 흙쌓기, 조경 1식 | -자연석 석축쌓기 L=40.0m -평균 높이 4.60m | |
| | | 교량 외부마감 | 석재마감 | 화강석 판석마감 | |
| | | 허가기간 | 2012.11.5~2012.07.30 | 2012.11.5~2013.12.31 | |
| 보고 | 명승 제15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문화재 명칭 :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 변경 문화재 명칭 : 남해 가천마을 다랑논 ○ 추진 결과 : 현행 명칭 유지 ○ 사유 : 국립국어원에 문의결과 현재 문화재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으로 현재 문화재 명칭 유지 | | | <현행유지> |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